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공유재산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7조 제1항중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하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로 하고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 단서 중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소관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관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 제5호및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기요금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4조 (중요재산)①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함 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제곱미터 ②토지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면적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 ③중요재산 한계기준으로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 절차를 이행할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일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제4조 (삭제)

현행	개정 (안)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당초 단일목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 6. 기타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법 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u>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u>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u>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u>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취득과 동 재산을 양여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 - - - - - - - - - - - <u>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u> - - - - - <u>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u> - - - - - - - - - - - - - - - <u>변경계획을</u> <u>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 하기</u> <u>전까지</u> - - - - - ② (삭제) ③ (삭제)

현행	개정 (안)
④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 - - - - - - - - -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소관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관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 (관사운영비의 부담)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55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

현행	개정 (안)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5. 전기요금 (단, 1급관사에 한함)</u>	<u>5. 전기요금 (단, 1급.2급관사에 한함)</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u>7. 수도요금 (단, 1급관사에 한함)</u>	<u>7. 수도요금 (단, 1급.2급관사에 한함)</u>
<u>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단, 1급관사에 한함)</u>	<u>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단, 1급.2급관사에 한함)</u>